

정부, 역외탈세 근절대책 발표에 따른 전망

2016. 6. 1. 정부는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마다 급증하는 역외소득 탈세 혐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 4가지로서, 향후 역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바, 정부 대책의 세부내용 및 최근 국세청 동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외탈세 근절대책 주요 내용〉

1.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2. 빈틈없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3.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4. 형사처벌 강화

1. 성실신고 유도 및 역외탈세 정보수집 확대

(1)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및 거짓소명 금액에 대한 과태료 인상¹

- 매년 6월 30일이 신고기한인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관련하여,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종전 최대 10%의 과태료를 최대 2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종전 10%의 과태료를 미(거짓)소명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하여, 미신고 후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40%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² 2015년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공개 예정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확대

- 2016. 7.부터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하 “FATCA 협정”이라 함)에 따라, 우리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의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신고 256건 적발, 총 507억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2) 2015년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공개 예정

미국 내 금융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기존의 개별적 정보수집에 비해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 OECD 회원국 등과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CRS 협정”이라 함)에 따라, 2016. 6. 3. 기준 2017년부터는 52개국(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2018년부터는 총 81개국(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세청에서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수집이 용이해진바, 누락된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역외탈세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강화

(1) 해외금융계좌 및 탈세제보 포상금 중복지급 허용 (최대 50억 원 지급)

- 2014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을 종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5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같이 지급시 최대 50억 원을 수령 가능함에 따라, 향후 관련 제보가 급증하여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 역외탈세 적발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적발금액	1조 789억원	1조 2,179억원	1조 2,861억원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 역외소득 은닉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

- 현재 구체적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병처리·구형기준을 강화하고, 국부유출사범에 대한 재산몰수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사범공조를 통한 해외재산 환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정부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

- 위와 같은 정부 대책 및 각국 정부의 정보교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제반 문제점 및 신고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는 6월 30일이 신고기한인 2015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역외소득 자진신고에 대한 대고객 세미나 개최, 다수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업무 및 해외금

용계좌신고업무 대리, 정보교환(FATCA, CRS)과 관련한 정부(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종합자문, 역외소득·재산과 관련한 다수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등 수행경험을 통해 역외소득·재산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등과 관련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이정진 전문위원	TEL. 02 316 4417	E-Mail. jjlee@shinkim.com
● 하병만 전문위원	TEL. 02 316 1689	E-Mail. bmha@shinkim.com